

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9년 11월 11일
- 회부일자 : 1999년 11월 11일

3. 제안이유

- 문화재는 한번 멸실되면 복구가 불가능하고 많은 사람이 공유할 소중한 민족유산임을 감안하여 문화재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체제는 유지하되
-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그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
- 민족의 문화유산인 문화재의 실효성 있는 보존·관리와 행정편의 위주로 개인의 재산권 등 과도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실효성이 상실된 현행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-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·관리자에 대한부동산문화재, 동산문화재 및 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, 관리상황보고제 및 관리방법 등 지시 규제를 폐지
- 개인소유 문화재를 매각할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를 도에 우선적으로 매도하도록 하는 의무 등 비효율적인 각종 행정규제를 폐지·정비
-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및 관리단체가 당해 문화재를 수리할 의무와 수리시 도의 수리지시 및 전문가의 기술지도를 수용하도록 의무화하던 규제를 폐지
- 도지정문화재의 수리가 문화재의 보존·관리에 소유자에게 하는 수리지시 또는 채수리 명령을 폐지
- 전문분야별로 심도있는 문화재의 연구·조사를 위하여 전문위원 정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증원
- 심의 의결시 과반수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한 현행제도에서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은 민주원칙에 반하므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개정
-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모두 사망시에도 무형문화재의 전승·보존을 위하여 종목의 지정은 존속토록 개선하고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사망시 신고의무 폐지
- 도지정문화재의 관리에 관하여 도지사만이 소유자·관리자 등에 대한 행정명령권을 가지고 있던 것을 시장·군수도 도지정문화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권한의 일부를 부여
- 문화재 보존·관리의 원형유지 기본원칙 신설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신설
- 도지사, 시장·군수는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 취소시 청문을 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
- 비상시 도지사가 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, 매몰,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 바,

이는 정부의 규제개혁법령 정비에 따라 모법인 문화재보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

그 주요내용을 보면

첫째, 문화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위상을 강화하고, 심의의결시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한 현행제도는 민주원칙에 반하므로 부결로 처리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29건을 개정하고

둘째, 도지정문화재의 관리에 관하여 도지사만이 소유자·관리자 등에 대한 행정명령권을 가지고 있던 것을 시장·군수·도지정문화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사항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을 부여하고, 문화재 보호·관리의 원형유지 기본원칙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문화재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사항 13건을 신설하며

셋째,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·관리자에 대한 문제점 및 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, 관리상황보고제, 관리방법 등 지시 규제를 폐지하고,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및 전문가의 기술지도를 수용하도록 의무화하던 규제를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규제에 관한 사항 21건을 삭제하고, 기타 자구수정 17건 등 총 80건을 개정하려는 것으로

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